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 안내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.

2018년 11월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



1. 등록신청 대상자 :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·손자녀·증손자녀·고손자녀

※ “동학농민혁명참여자”란 1894년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, 같은 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.

2.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

가. 등록신청 서류

-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(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)
- 첨부서류
 - 유족명단(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)
 - 신청인의 부모·조부모·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.
 -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
 -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 -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. (유족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포함)

나. 제출방법

-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
- ※ 사무처주소 :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

3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(063-538-2897)로 문의하거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홈페이지(www.1894.or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